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약물운전 처벌 형량 강화 등〉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81호)

2024.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4인
2. 제안연월일 : 2024. 6. 21
3. 회부연월일 : 2024. 6.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약물운전의 처벌 수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규정한 처벌 수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낮은 측면이 있어, 약물운전의 법정형 상한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약물운전 근절에 있어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진 만큼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서 분리하여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현행법 규정을 보완하여 약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법상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 약물운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고, 약물운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5. (생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6. ----- -----제45조· 제45조의2----- ----- ----- ----- ----- -----.
27. ~ 33. (생략)	27. ~ 33. (현행과 같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 -----

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략)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45조, 제45조의2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질병

제45조의2(약물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으로 정상적
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
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
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제45조까지 및 제45조의2를

② -----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생 략)

② 고용주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

③ (현행과 같음)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5조
까지 및 제45조의2-----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생략)

4. ~ 9. (생략)

③ (생략)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

1. · 2. (현행과 같음)

3. -----

가. -----제45조, 제45조의2

--

나. (현행과 같음)

4.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primary-ruled paper. It features multipl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practice. The paper is otherwise blank, with no text or other markings.

1. ~ 3. (현행과 같음)
4. 제45조의2-----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 -----
5. ~ 20. (생략)	5. ~ 2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8조의2(벌칙) ① ~ ③ (생략)	제148조의2(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45조의2----- ----- ----- -----5년----- ---5천만원----- ---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¹⁾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이하 “약물운전”이라고 함)을 금지하고, 동법 제148조의2제4항²⁾은 약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음.

1)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48조의2(벌칙)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약물운전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다소 낮다는 지적에 따라 약물운전의 금지를 별도의 조로 신설하여 분리하고,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벌금형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을 고려할 때 약물운전 행위의 법정형을 음주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법체계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임.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의 경우 음주 1회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약물운전보다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약물운전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12개 예외사유로 평가하여 반의사불벌에 관한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의11에서 위험운전치사상의 경우 약물운전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음.

<자동차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

구 분		법정형
단순음주 또는 측정불응 2회 이상 (벌금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시 측정불응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회시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회시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 불응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1회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 0.2%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 0.08%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행위와 별개의 위법행위인 약물 사용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도로교통법상 금지되는 약물³⁾의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해 이미 개정안보다 높은 수준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는바,

3)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 사용 관련 처벌례>

법률	범죄 구성요건		법정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제3호~제5호	헤로인 사용 등	1년 이상 유기징역
	제6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마약 또는 오남용 우려가 심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등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제61조제1항 제1호 제5호제6호	대마 사용 등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화학물질 관리법」	제59조제6호	환각물질 섭취·흡입 등	3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약물사용행위와 약물운전행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고려할 때 법정형을 상향하더라도 실제 약물운전자에 대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대마 사용이나 환각물질 섭취·흡입 후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⁴⁾.

- 4)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동일하게 규정한 입법례>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참고로, 경찰청은 약물운전의 위험성과 타법에서 약물운전 사고 발생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물운전의 형량을 음주운전 상향 처벌수준과 같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45